

나.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 확인사항

- 연령기준 확인방법 :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생년기준표를 토대로 확인
- 구비서류 인정기준 : 모든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인정가능
- 추천서 유의사항 : 이용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인정가능(사업별서식 제18호)

***추천서 서식 구성 변경, 기존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의뢰서 삭제(2020년 변경)

- **[19 추가]**참중은카드 등 중복수혜 불가 사업 신청 과정에서 본 사업을 중도포기함을 밝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중도포기 확인 동의서 (사업별서식 제32호)'** 추가
- 관련 서식은 **'제13장.참고자료'**에서 확인가능

[이용권 신청 관련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공통서식 제1호(참고자료에 별첨) - **2020년 변경**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사군구용) : 공통서식 제5호(참고자료에 별첨)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필요서류 : 제2장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통서식 제21호(참고자료에 별첨)
 - 기타 증빙서류
- 사업별 자세한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 도표에서 확인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1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p>소득 및 연령</p> <p>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8세(2012년생)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2008년생) (*연령 : 2008.01.01.~2012.12.31.)</p> <p>다음 ①,②,③,④,⑤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p> <p>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추가)</p> <p>④ 6개월 이내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학교장 또는 대안학교의</p>	<p>선정기준</p>

연도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p>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안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 (삭제)</p> <p>④ 6개월 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⑤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청소년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p> <p>☞ ④, ⑤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1.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p> <p>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 아동정서발달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p>	
	<p>중복제한</p>	<p>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p>	
	<p>유의사항</p>	<p><input type="checkbox"/>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소견서 또는 추천서 발급 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p>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p> <p>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p> <p>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p> <p>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p> <p>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p> <p>⑥-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p> <p>⑥-2.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p> <p>⑥-3.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 (추가)</p> <p>⑥-3.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학교장(“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학교장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장) 추천서 (삭제)</p> <p>⑥-4.[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p> <p>⑥-5.[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추천공문 → 2020년 추가</p> <p>→ ⑥-1~⑥-5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p> <p>※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p>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p>소득 및 연령</p>	<p>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이하(2002년생) 아동 (*연령 : 2002.01.01.~)</p>
	<p>선정기준</p>	<p>다음 ①~⑧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p> <p>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p>	

연도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p>(※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 (추가)</p> <p>④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⑤ 6개월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⑥ 6개월이내에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와 직접 실시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p> <p>㉠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p> <p>㉡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p> <p>㉢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p> <p>➔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를 자율 선택하여 추천서를 발급한 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p> <p>⑦ [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 6개월이내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2019년 추가 / ㉠~㉣ 중 발급 가능한 것으로 선택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p> <p>★⑧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청소년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p> <p>☞ ⑤, ⑥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p>1.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p> <p>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p>
		중복제한	<p>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부평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삭제),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심층검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 2020년 추가</p>
		유의사항	<p>□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p> <p>□ 참좋은카드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본 사업 중도포기 서식 활용하여 해당 접수처에 제출 (사업별서식 제32호 / 2019년 추가) (삭제)</p> <p>□ 병원 진료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연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375 481 1436 660"> <tr> <td data-bbox="375 481 885 616">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885 481 1436 616">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 data-bbox="375 616 885 660">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td> <td data-bbox="885 616 1436 660">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able> <p>⑤-1.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⑤-2.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⑤-3.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추가) ⑤-4.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⑤-5. [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6. 문제행동위험군과 관련하여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6개월이내 발급받은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결과서 함께 제출(다음 중 택1하여 제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⑤-7.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함) ⑤-8. [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추천공문 → 2020년 추가</p> <p>➔ ⑤-1~⑤-8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p> <p>※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p>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table border="1" data-bbox="375 1422 1436 1971"> <tr> <td data-bbox="375 1422 518 1512">소득</td> <td data-bbox="518 1422 1436 1512">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td> </tr> <tr> <td data-bbox="375 1512 518 1971">연령 및 선정기준</td> <td data-bbox="518 1512 1436 1971"> 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1960년생) 이상인 자 (*연령:~1960.12.31.)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②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기준 없음) ③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 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1960년생) 이상인 자 (* 연령:~1960.12.31.)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②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기준 없음) ③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 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 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1960년생) 이상인 자 (* 연령:~1960.12.31.)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②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기준 없음) ③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 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연령기준 없음)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연도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td> <td> <p>★④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p> <p>☞ ④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중복제한</td> <td>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td> </tr> <tr> <td>유의사항</td> <td>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1965년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td> </tr> </table>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카드신청 관련사항은 카드사에 별도 문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에 해당하는 경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td> </tr> <tr> <td rowspan="2">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td> <td>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td> </tr> <tr> <td> ㉡만19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td> </tr> </table> <p>⑤소득기준에 부합한 경우, 다음 ㉠,㉡,㉢ 중 해당사항에 맞추어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및 선정기준' ①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연령 및 선정기준' ②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증(지체 또는 뇌병변) ㉢ '연령 및 선정기준' ③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우선 선정] '연령 및 선정기준' ④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 2020년 추가 		<p>★④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p> <p>☞ ④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1965년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만19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p>★④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p> <p>☞ ④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1965년생) 이상)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만19세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4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20% 이하</td> </tr> <tr> <td>★선정 기준</td> <td>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 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 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연도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p>(2020년 변경)</p>	<p>★① 만 65세이상이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연령:~1955.12.31.) ※ 만 65세이상의 경우, 정신장애인 이외에 신청불가함.</p> <p>★② 만 64세이하이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제출가능한 자(*연령:1956.01.01.~)</p> <p>★③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p> <p>☞ ③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p>
		<p>중복제한</p>	<p>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2019년 추가)</p>
		<p>유의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한 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신청가능</p>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p>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p>	<p>■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p>
		<p>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p>	<p>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p>
		<p>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p>	<p>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p>
		<p>⑤소득기준이 부합한 경우,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⑤-1.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정신장애) ⑤-2 장애인등록증(정신장애) 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⑤-3. [우선 선정]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 2020년 추가</p>	
<p>5</p>	<p>장애인 보조기기</p>	<p>소득</p>	<p>없음</p>

연 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렌탈서비스	<p>연령</p> <p>만 24세(1996년생) 이하 장애인 (*연령:1996.01.01.~)</p> <p>※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p> <p>선정기준</p> <p>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p> <p>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trophy)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p> <p>※“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장애(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뇌병변)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로 인정</p> <p>유의사항</p> <p>□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p> <p>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p> <p>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p> <p>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p>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p>	<p>■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p> <p>■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p>
		<p>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p>	<p>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p>
		<p>신청자가 만19세이상~만24세이하인 경우</p>	<p>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p>
		<p>⑤-1.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 : 장애인등록증(지체/뇌병변)</p> <p>⑤-2. 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trophy)을 가진 아동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p> <p>**⑤-1과 ⑤-2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p> <p>※예외 경우 인정에 따른 필요서류(만 6세 미만인면서 지체·뇌병변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지체·뇌병변장애 예견에 대한 의사진단서</p> <p>※예외 경우 인정에 따른 필요서류2(정신적 장애인면서 지체/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 지체/뇌병변)</p>	
6	장애인 재활승마 서비스	<p>소득</p> <p>기준중위소득 140% 이하</p>	
		<p>연령 및 선정기준</p>	<p>만 6세(2014년생) 이상의 등록장애인(*연령:~2014.12.31.)</p>
		<p>★우선 순위</p>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2020년 변경)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장애인등록증		
7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 서비스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만 7세(2013년생)~만 15세(2005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연령 : 2005.01.01.~2013.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5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8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만 13세(2007년생) 이상의 등록 장애인(*연령:~2007.12.31.)
		★우선 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p>(2020년 변경)</p> <p>유의사항</p>	<p>2.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389 645 1425 949"> <tr> <td data-bbox="389 645 804 770">신청자가 만13세인 경우</td> <td data-bbox="804 645 1425 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 data-bbox="389 770 804 846">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804 770 1425 846">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r> <td data-bbox="389 846 804 949">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td> <td data-bbox="804 846 1425 949">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td> </tr> </table> <p>⑤장애인등록증</p>	신청자가 만13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신청자가 만13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9	노인 수중운동 교실	<table border="1" data-bbox="368 1003 1441 1688"> <tr> <td data-bbox="368 1003 512 1057">소득</td> <td data-bbox="512 1003 1441 1057">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td> </tr> <tr> <td data-bbox="368 1057 512 1379">연령 및 선정기준</td> <td data-bbox="512 1057 1441 1379">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③ 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③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td> </tr> <tr> <td data-bbox="368 1379 512 1518">★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 data-bbox="512 1379 1441 1518">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노인수중운동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td> </tr> <tr> <td data-bbox="368 1518 512 1572">중복제한</td> <td data-bbox="512 1518 1441 1572">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td> </tr> <tr> <td data-bbox="368 1572 512 1688">유의사항</td> <td data-bbox="512 1572 1441 1688">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③ 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③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노인수중운동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우선 선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p>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③ 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2020년 추가 ☞ ③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노인수중운동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2019년 추가)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 2020년 추가														
10	장애아동 학습지원 서비스	<table border="1"> <tr> <td>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40% 이하</td> </tr> <tr> <td>연령</td> <td>만 5세(2015년생)이상~만 18세(2002년생)이하인 자 (*연령:2002.01.01.~2015.12.31.)</td> </tr> <tr> <td>선정기준</td> <td>소득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①,②,③,④,⑤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등록장애인 ②특수교육대상아동(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특수학급에 입학되어있는 학생도 가능함)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학 확인서(학교장발행) 제출가능자 ③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교육청발행) 제출가능자 ④특수학급 입학자격에 해당하나 ②,③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제출가능자 ⑤현재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 ('17년 8월 추가)</td> </tr> <tr> <td>★우선 순위 (2020년 변경)</td> <td>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td> </tr> <tr> <td>유의사항</td> <td><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tr> <td>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r> <td>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td> <td>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able> <p>⑤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특수교육대상아동 : 다음중 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서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 학교장 발행 '특수학급 입학확인서' ■ 교육청 발행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 '장애아통합반' 대기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7년 8월 추가) </p>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5세(2015년생)이상~만 18세(2002년생)이하인 자 (*연령:2002.01.01.~2015.12.31.)	선정기준	소득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①,②,③,④,⑤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등록장애인 ②특수교육대상아동(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특수학급에 입학되어있는 학생도 가능함)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학 확인서(학교장발행) 제출가능자 ③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교육청발행) 제출가능자 ④특수학급 입학자격에 해당하나 ②,③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제출가능자 ⑤현재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 ('17년 8월 추가)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5세(2015년생)이상~만 18세(2002년생)이하인 자 (*연령:2002.01.01.~2015.12.31.)															
선정기준	소득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①,②,③,④,⑤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등록장애인 ②특수교육대상아동(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특수학급에 입학되어있는 학생도 가능함)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학 확인서(학교장발행) 제출가능자 ③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교육청발행) 제출가능자 ④특수학급 입학자격에 해당하나 ②,③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제출가능자 ⑤현재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 ('17년 8월 추가)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11	성인 심리상담 서비스	<table border="1"> <tr> <td>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년 소득기준 상향조정</td> </tr> <tr> <td>연령</td> <td>만 18세(2002년생) 이상인자 (*연령:~2002.12.31.)</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년 소득기준 상향조정	연령	만 18세(2002년생) 이상인자 (*연령:~2002.12.31.)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년 소득기준 상향조정															
연령	만 18세(2002년생) 이상인자 (*연령:~2002.12.31.)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유의사항</p>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 성인심리상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추가)</p> <p>※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p> <p>□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12	오감쑥쑥 서비스	<p>소득</p> <p>연령</p>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중복제한</p> <p>유의사항</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p> <p>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p> <p>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p> <p>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389 757 1425 913"> <tr> <td>신청자가 만18세인 경우</td> <td>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td> </tr> <tr> <td>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td> <td>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td> </tr> </table> <p>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2019 소득기준 상향조정</p> <p>만 4세(2016년생)~만 6세(2014년생)이하 아동 (*연령:2014.01.01.~2016.12.31.)</p>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 오감쑥쑥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꼬마작가만들기 프로젝트, 발달재활서비스</p> <p>□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신청자가 만18세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신청자가 만18세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13	부모유아 관계증진 서비스	<p>소득</p> <p>선정기준</p>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중복제한</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p> <p>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p> <p>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p> <p>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p> <p>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p> <p>기준중위소득 140% 이하</p> <p>만 2세(2018년생)~만 3세(2017년생)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아동연령:2017.01.01.~2018.12.31.)</p>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탈케어서비스(미추홀구)</p>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서비스 대상이 유아 1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 대상이 유아 2인인 경우, 부모 2명이 각각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 대상이 유아 3인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인데 한부모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14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의 만 65세(1955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5.12.31.) ②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15	나를찾는 5060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이면서 만 50세(1970년생)이상 ~ 만 64세(1956년생)이하인 자 (*연령: 1956.01.01. ~ 1970.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나를 찾는 5060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연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6	섬마을 행복나눔 서비스 (웅진군)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2013년생)~만 18세(2002년생) 이하 아동 (*연령:2002.01.01.~2013.12.31.)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섬마을 행복나눔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17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미추홀구)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의 만 65세(1955년생) 이상인 자 (*연령:~1955.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이 가능한 자 ②노인자살위험검사(자살생각척도검사 등)를 통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검사결과지 동봉) ③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
		★우선 순위 (2020년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연번	사업명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p>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는 절대 불가함.</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⑤-2.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노인자살위험검사 결과지 ⑤-3.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의 추천서 ➔ ⑤-1, ⑤-2, ⑤-3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2019 변경)</p>
18	<p>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교육 서비스 (웅진군, 강화군)</p>	<p>소득 및 연령</p>	<p>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2개월 ~ 만 4세(2016년생) 이하 영유아 (*연령 : 2016.01.01.~ 생후 12개월) * 2019년부터 영유아에 이용권 부여 및 최소 연령기준 상향조정</p>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유의사항</p>	<p><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부여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19	<p>즐거움 아침 행복한 학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p>	<p>소득 및 연령</p>	<p>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만 6세 이상(2014년생)~만 15세(2005년생) 이하의 초·중학교 재학생 (*연령:2005.01.01.~2014.12.31.)</p>
		<p>★우선 순위 (2020년 변경)</p>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즐거움 아침, 행복한 학교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유의사항</p>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p>